

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
|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|
| 인 구 청 년 과       |

#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24. . .   |
| 발 의 자 | 허민근 의원 외 5인 |

#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## (허민근 의원 대표 발의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: 2024. . .

발의자: 허민근·김근한·김영길·김정도  
이명희·장미경 의원(6인)

### 1. 제안이유

청년의 역량과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함이며,  
「청년기본법」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친화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하여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조사와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마.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# 3. 조례안: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##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6
- 2)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의8
- 3)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조, 제5조, 제6조

나. 예산조치: 인구청년과 의견제출(별첨)

다. 부서검토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별첨)

##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구미시의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.
2. “청년친화도시”란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, 관련 사업을 발굴·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미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청년친화도시 구성 원칙)**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

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
2.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
3. 교육·고용·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
4.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 조성

**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.

1.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
2.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
3.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
4.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
5.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**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

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**제7조(조사 등)** 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(이하 “조사·연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**제8조(지원)**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9조(홍보 및 교육)**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청년기본법」

제24조의6(청년친화도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, 청년발전,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청년친화도시”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·절차,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

제21조의8(청년친화도시의 지정)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(이하 “청년친화도시”라 한다)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
2.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
3. 청년참여, 청년발전,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

4.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

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

2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

가.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

나.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

다.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

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

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.

## □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2. “청년정책”이란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, 고용 확대, 권익 증진, 능력 발전

등을 목적으로 구미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을 말한다.

3. “청년활동”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.
4. “청년지원”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.
5. “청년단체”란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6. “청년공간”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.

**제5조(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)** ① 시장은 구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
2.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

가.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 
의 청년의 참여 확대

나. 청년의 능력개발

다.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

라.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

마.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

바. 청년 공간 마련 및 운영

사. 청년의 권리보호

3.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

4. 청년정책 민·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

5.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시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.